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961 |
|----------|-----|

2016년 3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월 15일, 이윤희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3월 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도요금을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전자고지 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고지 신청자 수는 미미한 실정임.

실제 2015년 9월 현재 전자고지 신청자는 5.2% 수준이며,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따라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부서와 협의 완료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 비대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가. 개요

-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은 수도요금 종이 고지서 고지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황

- IT정보화 시대에 맞춰 각종 세금 및 요금에 대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sup>1)</sup>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 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음.
- 이에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에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sup>2)</sup>해 주고 있지만,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다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 10. (생략)

1) 종이 고지서 고지에 비해 전자고지는 1건당 397.6원(인쇄 40.0원 + 송달 357.6원)의 비용 절감

2) 세부 감면방법 및 감면액(률)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규정

전자고지의 이점 및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은 5.2%('15년 9월 현재)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그리고 당초 전자고지 시행으로 종이 고지서 미인쇄 및 미송달에 따라 전자고지 1건당 397.6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비용 보다 편익(便益)이 높았지만,

2015년 7월 22일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가 기존 민간위탁에서 기간제 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급제 임금체계에서는 송달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으로 전자고지 1건당 223.6원의 비용 손실<sup>3)</sup>이 발생하고 있음.

〈전자고지 1건당 비용 편익 현황〉

| 구 분    | 비 용                 | 편 익                   | +/-     |
|--------|---------------------|-----------------------|---------|
| 민간위탁   | 263.6원<br>(수도요금 감면) | 397.6원<br>(미인쇄 + 미송달) | +134.0원 |
| 기간제 고용 | 263.6원<br>(수도요금 감면) | 40.0원<br>(미인쇄)        | -223.6원 |

\* '15년 기준 종이고지서 1건당 인쇄비용 40.0원, 송달비용 357.6원, 전자고지 1건당 평균 감면액 263.6원 가정

2)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 신청자 수도요금 감면(안 제31조제1항 제8호)

- 동 조례안은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을 자동이체<sup>4)</sup> 신청자로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요소

3) '16년 전자고지에 따른 총비용 손실은 '15년 대비 전자고지 신청 건수 증가율이 15.45%(최근 3년 증가율 평균)로 가정할 경우 19,872천원 예상

4) 수도요금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OCR고지서, 입금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ARS, 편의점, CD/ATM기기 납부가 있음.

를 해소<sup>5)</sup>하고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임.

그리고 전자고지 확대는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 손실 보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편익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조회에서도 이견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다만, 전자고지를 해지하지 않고 이사 감에 따라 신규 전입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나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도 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동 조례안 시행<sup>6)</sup>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비율이 37.3%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5.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은 전자고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 조례 개정과 함께 전자고지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현황〉

(단위 : %)

| 구 분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9월 |      |
|-----|-------|------|-------|------|----------|------|
|     | 자동이체  | 전자고지 | 자동이체  | 전자고지 | 자동이체     | 전자고지 |
| 비 율 | 37.9  | 4.3  | 37.5  | 4.8  | 37.3     | 5.2  |

5) 세종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고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6) '16년 7월 납부요금부터 적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6년 7월 납부  
요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b>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b></p> <p>9. ~ 10. (생략)</p> <p>② (생략)</p> |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br/>-----<br/>-----<br/>----.</p> <p>1. ~ 7. (현행과 같음)</p> <p><b>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b></p> <p>9.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